

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설명자료

(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, '24. 11. 29.)

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설명자료 배포를 통하여 연구현장 혼란 최소화 및 올바른 연구개발비 사용 문화 유도

1. 기본사항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의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 시행 공문('24. 11. 13.)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

제25조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
□ 사전 내부결재 완료의 세부 적용 기준

- (내부결재의 요건)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(위임전결규정 등)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
 - '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'의 범위: 사전에 계획된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연구책임자의 기안**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***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도 폭넓게 인정
 - * 연구비 사용기준 제70조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(또는 결재)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이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연구책임자의 결재권한을 회의비 중 식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위임하는 것은 불가
 - ** 사전에 완료된 기안이 사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
 - ***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의미

☞ 회의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회의비 집행에 대한 기준(위임전결, 사용절차 등)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

☞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으로 연구책임자가 기안→결재권자가 최종 결재* 이후 회의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.

* 연구개발기관 결재권한, 위임전결규정 및 계정책임자 등 확인 필요

- ☞ 연구책임자가 회의 시작 전 기안문을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비를 사용할 경우,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아 회의비 사용을 인정함 ※기안 시점 “사전” 입증 필요
- ☞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자(회의참석)가 기안 후 연구책임자,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경우 회의비 사용을 인정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함
- ☞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기안 또한 인정하며 절차는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함
- ☞ “연구책임자의 결재권한을 회의비 중 식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위임하는 것은 불가”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국가연구개발과제만 적용 또는 회의비 위임전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서는 아니됨을 의미함

□ 다과 포함 여부

○ (다과 포함 여부)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회의비 중 식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

- ☞ 갑작스럽게 회의를 추진하게 되어 내부 결재를 하지 못할 경우, 최소한의 비용(음료 한정)에 대하여 인정하고자 함 ※음료 구매 입증 필요
- ☞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 내부결재 후 음료, 과자를 비롯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다과 허용 항목을 구매할 수 있음